



# 특허 Q&A

## Q. 국제출원 시 선택하는 국제출원언어는 무엇입니까?

- ▣ 국제출원언어는 수리관청이 정합니다.
- ▣ 한국특허청이 수리하는 국제출원언어는 국어, 영어, 일어입니다.
- ▣ 2009년도 이후 국어로 출원시에는 국제출원서(REQUEST)와 명세서 언어가 동일해야 합니다.

## Q. 출원인은 명세서 등을 언제 보정할 수 있습니까?

- ▣ 청구범위 보정(PCT19조 보정 : Article19)  
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,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국제사무국(수리관청이나 국제조사기관이 아님에 주의)에 청구범위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▣ 명세서등 보정(PCT34조 보정 : Article34)  
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개시 전(우선일로부터 28개월, 국제예비심사착수로부터 6개월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번역문 접수일로부터 6개월 중 늦은 날)까지 횡수에 관계 없이 명세서, 청구 범위,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. 보정서는 직접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